

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(제36조제2항관련)

공사금액의 규모	건설기술자 배치기준
300억원이상 (법 제58조의 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)	○ 기술사 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
200억원이상	○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
50억원이상	○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
20억원이상	○ 기사 1급이상 자격 취득자 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
20억원미만	○ 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